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27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부제출(제220227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존치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 폐지(안 제33조)	2

I. 정부제출(제2202273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7. 26.

다. 회 부 일 : 2024. 7.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가. 준치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 폐지(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③ (생략)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④ ----- ----- ----- ----- ----- 제33조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 ----- ----- ----- ----- ----- ----- ----- ----- 제32조, 제33조, 제36조 ----- -----

현행	개정안
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 ----- ----- ----- ----- ----- ----- ----- --. 제33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u> <u>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④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u> <u>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u>	

현행	개정안
<u>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⑥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u>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② (생략)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제33조 ----- ----- -----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 ----- ----- ----- ----- -----

현행	개정안
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	----- ----- ----- ----- 제33조 -----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 ----- ----- ----- ----- ----- ----- ----- 제33조 ----- -----. ----- ----- ----- ----- ----- -----

현행	개정안
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마. <u>제33조제1항</u>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 차.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감독) ① ----- ----- ----- ----- -----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제33조</u>----- ----- 바. ~ 차.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산업단지¹⁾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²⁾에 있어 사업시행자³⁾가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⁴⁾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이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철도·항만·케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설 부담)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이하 ‘준치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함)하게 하는 현행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⁵⁾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는 현행법상의 부담금 중 부과목적 또는 원칙에 맞지 아니하거나 손쉬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던 부담금 중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들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년 3월 27일)⁶⁾’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를 통한 부담금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그간 부담금 지속 정비에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존속 중('24년 기준 91개, 24조원 규모 운용중(GDP 대비 약 1% 수준))

□ (진행경과) 부담금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민관 TF를 통한 정비기준·대상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비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8개)

- 전력기금 부담금: 약 30% 인하, △0.9조원
-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1.1→0.7만원), 면제대상 확대(2세→12세 미만)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입장권 가액의 3%)
-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면제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 기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50% 인하,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②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정비(11개)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0.4조원
- 개발부담금: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 △0.3조원
-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중소, 영세기업 대상 감면·폐지
 - *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소유자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 확대, 연매출 600→1,000억원) 등
- 농지보전부담금: 非 농업진흥지역 효율 인하(공시지가30→20%), △0.3조원
- 기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 제외, 방제분담금 효율 인하 등

③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도로손괴 원인자부담금 등 폐지

등을 통해 91개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교육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22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담금 폐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정부안) 현황 >

연번	부담금	부처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교육	학교용지법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2	출국납부금	외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행안	지방자치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4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문체	영화비디오법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폐지
5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폐지
6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지
7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산업	광업법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9	수질개선부담금	환경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10	수익자부담금(댐건설관리법)	환경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11	원인자부담금	국토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폐지
12	시설부담금(물류단지)	국토	물류시설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3	시설부담금(산업단지)	국토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4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금 폐지
15	수산자원조성금	해수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16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수	해양심층수법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1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수	해운법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연번	부담금	부처	법률	주요 내용
18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재	담배사업법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
		복지	국민건강증진법	
19	폐지 부담금 전반	기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비방안(327)의 18개 폐지 부담금과 既정비 4개 부담금(22대 국회 재제출)* 포함하여 별표 개정 * 화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전(사)용차 일사부담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존치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부과·징수한 존치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과 금액은 34억 3,600만원, 총 징수 금액은 30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부과 및 징수 금액이 각각 6억 8,700만원과 6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존치 시설물 소유자가 경감받게 될 부담금 규모는 위의 금액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산업단지개발 관련 준차시설물 공공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9	'20	'21	'22	'23	연평균
부과(A)	-	1,167	227	1,959	83	687
징수(B)	184	940	80	-	1,876	616
징수율(B/A)	순증	80.5	35.2	-	2,260.2	475.1

* 자료: 국토교통부

* 연도별 징수율 차이는 부담금 분납 및 소송 등으로 징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산단 개발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음.

↳ (예시) '23년 징수된 1,876백만원은 '22년도에 부과된 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소관 부담금 폐지를 위해 제출한 타 법률 개정안과의 연간 부담금 경감 금액을 비교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그 경감 금액이 연평균 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에서의 경감액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내용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 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 부담금 경감 효과 비교 >

구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예상 경감금액	4,000만원	4,000만원	6억 8,700만원 (부과금 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부과·징수된 준치 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의 경우에는 타 법률에서 부과·징수된 부담금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4년도의 경우에는 동 부담금의 부과·징수 예정액이 8,900만원에 불과하고, 2025년도의 경우에도 부과·징수될 동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준치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에서의 준치시설물 공공시설 설치 부담금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부담금의 실효성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미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국가단지설 시계획 등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내 준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4
